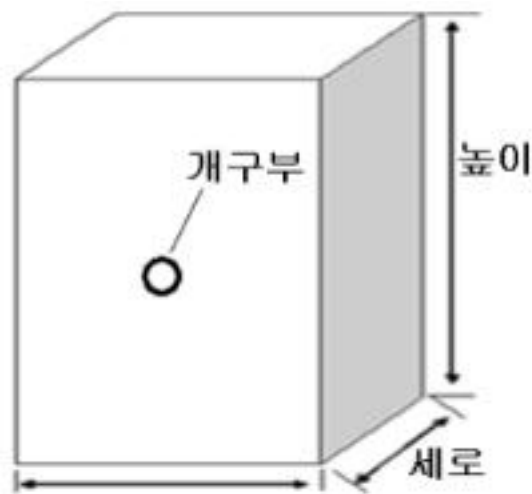


[별표4] 소화등급시험 (제25조)

1. 소화등급시험모형

소화시험등급	소화시험 모형크기	비고
1등급	가로(600mm) ×세로(600mm)× 높이(1000mm)	세부모양 및 치수는 [소화시험모형크기]와 같음
2등급	가로(900mm) ×세로(900mm)× 높이(1500mm)	
3등급	가로(1200mm)×세로(1200mm)×높이(2000mm)	
4등급	가로(1500mm)×세로(1500mm)×높이(2500mm)	
5등급	가로(1800mm)×세로(1800mm)×높이(3000mm)	



[소화시험 모형크기]

※ 시험모형 중간지점에는 약제 방출 전 소화모형이 자연 소화되지 않도록 직경 30 mm이상의 개구부 2개를 마주하게 설치할 것<개정 2024.7.25.>

2. 시험방법

2.1 시험의 일반조건

- (1) 시험실은 출입문이 있는 실내공간으로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.
- (2) 소화시험 장소는 가능한 $(20 \pm 2) ^\circ\text{C}$ 로 유지하여야 하며, 자동 소화장치는 $(20 \pm 2) ^\circ\text{C}$ 에서 최소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7.25.>
- (3) 소화시험은 자동소화장치가 소화시험모형의 천정에 가장 근접하

도록 설치하여 실시한다.<신설 2024.7.25.>

- (4) 화재모형에 소화약제의 직접 분사를 방지하는 차폐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한다.<신설 2024.7.25.>

2.2 A급 소화시험

- (1)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(9 ~13) %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한다.
- (2) 해당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소화시험용 목재규격 및 배열 방법에 의하여 목재를 배열시킨다.
- (3)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다음 표에 의한 시간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(분사식 수동 작동, 파열식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) 시험한다. 다만,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.

등 급	예비연소시간(분)
1,2 등급	4분
3,4,5 등급	6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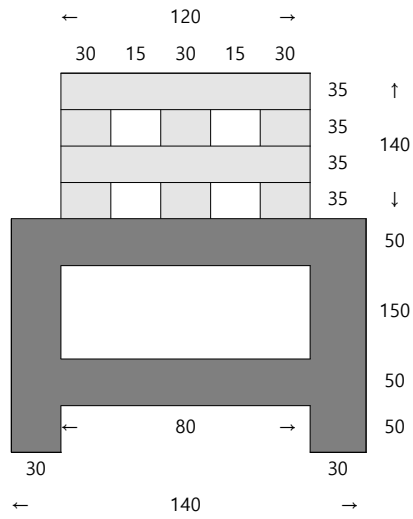
- (4) 예비연소시의 연료는 n-헵탄을 사용하고 연료량은 다음 표의 양으로 연소시킨다.

등 급	n-헵탄의 양
1 등급	70 ml
2 등급	100 ml
3,4,5 등급	200 m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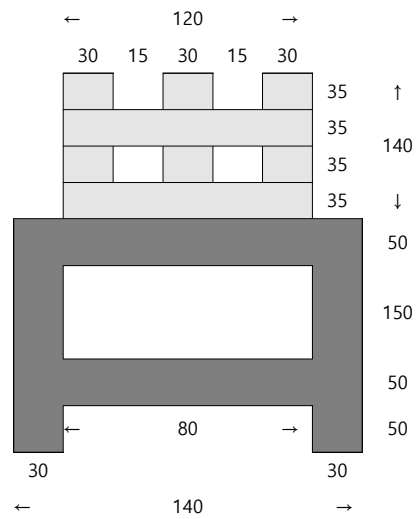
[A급 화재모형크기]

등급	화재모형크기(가로×세로)	비고
1등급	가로(120 mm) ×세로(120 mm)	3열4단배열
2등급	가로(150 mm) ×세로(150 mm)	3열4단배열
3,4,5등급	가로(200 mm) ×세로(200 mm)	3열4단배열

(1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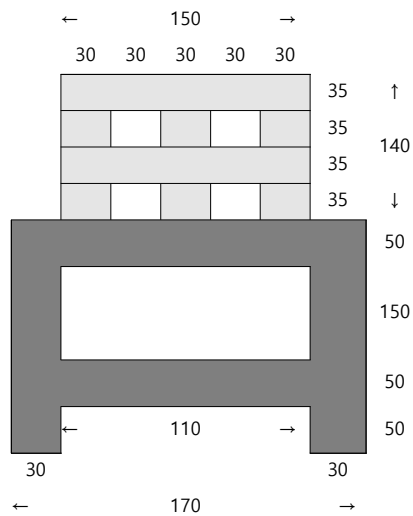


측 면 (단위 : 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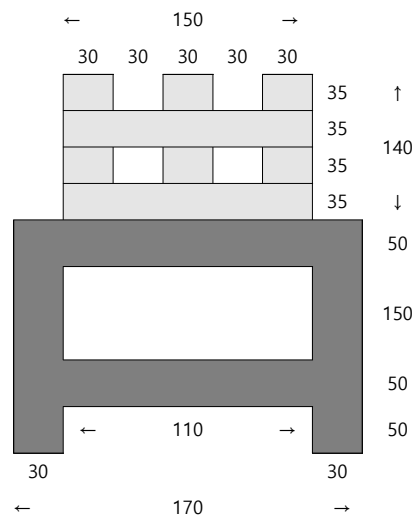


정 면 (단위 : mm)

(2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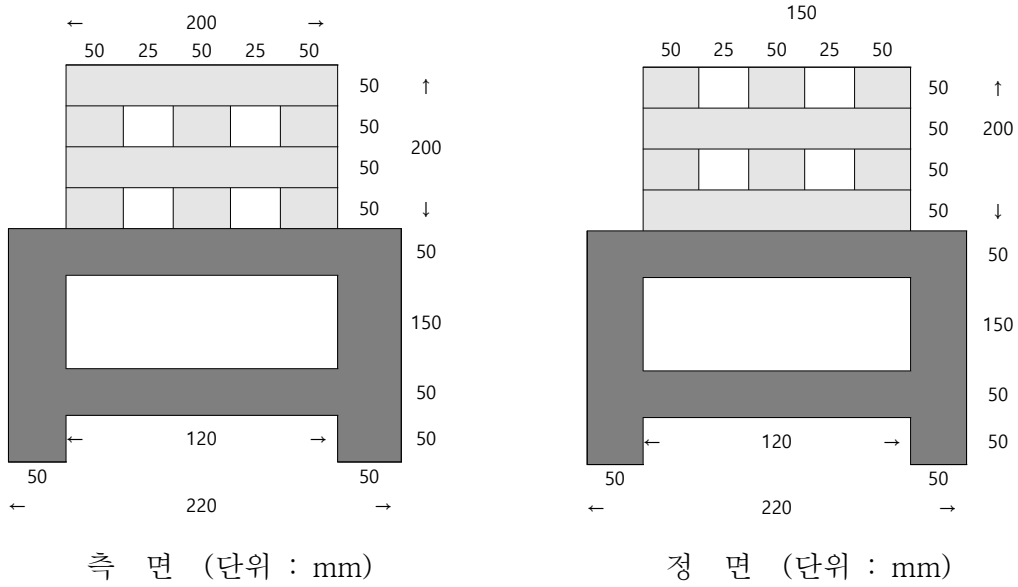


측 면 (단위 : mm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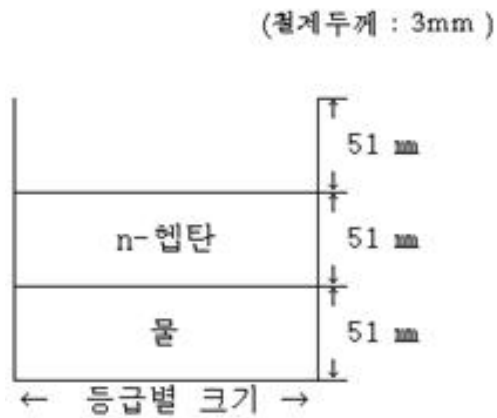
정 면 (단위 : mm)

(3, 4, 5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)



2.3 B급 소화시험

- (1)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n-헵탄을 사용한다.
- (2)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다음과 같이 연료와 물을 채운다.



[B급화재모형크기]

등급	화재모형크기(가로×세로)	비고
1등급	가로(100 mm) ×세로(100 mm)	
2등급	가로(150 mm) ×세로(150 mm)	
3등급	가로(200 mm) ×세로(200 mm)	
4등급	가로(250 mm) ×세로(250 mm)	
5등급	가로(300 mm) ×세로(300 mm)	

- (3)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0초 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(분사식 수동 작동, 과열식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) 시험한다. 다만,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.
- (4) <삭제 2024.7.25.>